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7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6월 19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학교장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‘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·관리계획’이 아닌 ‘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’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내 미세먼지 대응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, 일부 잘못 표기된 자구를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미세먼지 예측발표 시 “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”에 따라 조치하도록 수정함(안 제6조의4).
- 용어를 정비함(안 제6조의3제2항, 제6조의4제2호).

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의3제2항 중 “프로그램을”을 “프로그램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의4 중 “관리계획”을 “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”로 하고,  
같은 조 제2호 중 “휴업 검토”를 “휴업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6조의3(교육 등)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와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련 <b>프로그램</b>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의3(교육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련 <b>프로그램</b>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.</p>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6조의4(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)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<b>관리계획</b>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</li> <li>2. 학부모 안내, 야외수업금지, 수업의 단축, 등·하교 시간 조정, <b>휴업 검토</b></li> </ol>	<p>제6조의4(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)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<b>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</b>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개정안과 같음)</li> <li>2. 학부모 안내, 야외수업금지, 수업의 단축, 등·하교 시간 조정, <b>휴업</b></li> </ol>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점검 등) ① 학교의 장은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, 청소,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6조의3(교육 등)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의4(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)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

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
2. 학부모 안내, 야외수업금지, 수업의 단축, 등·하교 시간 조정, 휴업

제8조제1항 중 “유지·관리를”을 “유지·관리와 미세먼지 대응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개선”을 “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</u></p> <p>제6조의2(점검 등) ① 학교의 장은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, 청소,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</p> <p>제6조의3(교육 등)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의4(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)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

제8조(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·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·보급하고, 교육·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

2. 학부모 안내, 야외수업금지, 수업의 단축, 등·하교 시간 조정, 휴업

제8조(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) ① ----

----- 유지·관리와 미세먼지 대응을 -----

--.

② -----

---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-----

-----.